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 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은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훈령)에 있어 상위 법령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아울러 위원의 기피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 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 의무관계가 있는 경우</u> 2. <u>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 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 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u>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 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 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 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u> <u>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 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218